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[강수정 의원 발의]

의안번호	2080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1. 4. 5.  
발 의 자 : 강수정 의원  
찬 성 자 : 류명기 의원

## 1. 제안이유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천구민의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나. 활성화 계획 수립(안 제3조)
- 다. 구매비율 적용, 운행 지원, 충전시설 설치 운영(안 제4조 ~ 안 제6조)
- 라. 홍보 등(안 제7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
  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, 제10조의2, 제11조, 제11조의 2, 제11조의3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1. 4. 5. ~ 4. 12.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환경친화적 자동차”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.
2. “충전시설”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에너지를 충전하거나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활성화 계획 수립)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(이하 “활성화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

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활성화계획 추진의 기본방향
2.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용차량 구입·임차 등에 관한 사항
3.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
4.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구축과 관리·운영방안
5.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**제4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등)** ① 구청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 등을 따른다. 다만, 제3조의 활성화계획 수립 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출자·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**제5조(운행에 대한 지원)**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구청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
2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 주차장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6조(충전시설의 설치·운영에 대한 지원)**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·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계약 방식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(이하 “임대”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4조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.

**제7조(홍보 등)**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8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법령

## □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0. 4. 3.] [법률 제16306호, 2019. 4. 2., 타법개정]

**제10조의2(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)** ①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과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.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6. 1. 27.]

**제11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)** ① 시·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(標識)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[전문개정 2011. 5. 24.]

**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1.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
2. 공동주택
3. 특별시장·광역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, 특별자치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
4.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·시설 및 그 부대시설

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,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.

**제11조의3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**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(이하 “임대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,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,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8. 12. 31.]